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17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이성만·신정훈·송갑석

강득구 · 허종식 · 정일영

민병덕 • 박성준 • 이동주

이학영 · 송옥주 · 전용기

윤미향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6%에 불과하며,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수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거래 제외 등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변동 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 금액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 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표준약정서에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활성화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안 제21조제1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고하여야 함(안 제 21조제3항 신설).
- 다. 위탁기업은 약정서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료 가격이 100분의 3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위탁기업은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함.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사 방법"을 "검사 방법,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원재료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대한 기준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약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	
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	
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	
일, <u>검사 방법</u> , 그 밖에 필요한	검사 방법, 주요 원재료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u>조정방법</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원재료
	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대한 기준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
	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위탁기
	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⑥ (생 략) <신 설>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으로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 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 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 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 을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중소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약정서 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 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납 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 정분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